

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

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,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발급통지를 할 수 없는 다음 대상자들은 발급기간 내에 가까운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1. 공고대상

연 번	성 명	생 년 월 일	주 소	발 급 기 간
1	한○을	09.05.21.	한일로**번길 *, ***호 (공세동)	2026. 6. 1. ~ 2027. 5. 31.

2. 공고기간 : 2026. 7. 27. ~ 2026. 8. 10.

3. 지참물

-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매 (3.5cm x 4.5cm)
- 신분증명서 (학생증 또는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)
- 신분증명서가 없는 경우 부 또는 모,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이 동행

4. 유의사항

위 기간 내에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최고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2026. 7. 27.

용인시 기흥구 기흥동장

